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원 고 2011드합○○○○ 이혼 등
○○○ (78년생 여자)
주소 부산 ○○구 ○○동 ○○○-○
등록기준지 창원시 ○○구 ○읍 ○○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승균

피 고 1. ○○○ (78년생 남자)
주소 부산 ○○○구 ○동 ○○○ ○○○○○ ○○○동 ○○○호
등록기준지 창원시 ○○구 ○읍 ○○리 ○○○

2. ○○○ (74년생 여자)
부산 ○○구 ○○동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김영욱

사 건 본 인 ○○○ (2006년생 여자)
주소 부산 ○○○구 ○동 ○○○ ○○○○○ ○○○동 ○○○호
등록기준지 창원시 ○○구 ○읍 ○○리 ○○○

변 론 종 결 2012. 9. 27.

판 결 선 고 2012. 10. 18.

주 문

1. 원고와 피고 ○○○은 이혼한다.
2. 원고에게 위자료로,
 - 가. 피고 ○○○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2.부터 2012.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피고 ○○○은 피고 ○○○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2.부터 2012.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피고 ○○○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6. 피고 ○○○은 원고에게,
 - 가.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48,000,000원을 지급하고,
 -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2. 10. 19.부터 2019. 2. 28.까지는 월 400,000원, 2019. 3. 1.부터 2021. 2. 28.까지는 월 600,000원, 2021. 3.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월 75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7. 피고 ○○○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시 :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0:00부터 20:00
까지 및 여름, 겨울방학 기간 중 각 10일

나. 장소 : 피고 ○○○의 주거지 또는 피고 ○○○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

다. 방법 : 피고 ○○○이 사건본인의 주거지에서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고 다시 위
주거지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원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
지는 피고 ○○○이 각 부담한다.

9. 제2, 6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5항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은 원고에게, 재산분
할로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은 ○○○○대학교 재학 중 교제를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 ○○○은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결혼식을 올리고 2003. 12. 30.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2) 원고는 외향적 성격으로 자주 피고 ○○○과 의논 없이 가족, 친구 모임을 계획한 후 피고 ○○○에게 원고의 일정에 맞출 것을 원하였고, 피고 ○○○은 말수가 적은 편으로 원고와는 달리 여러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꺼려했다. 원고는 피고 ○○○의 직장 내 모임 횟수 등을 제한하거나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 매시간 전화하는 등 원고의 기준에 따라 피고 ○○○이 생활하기를 원하였으나, 피고 ○○○은 이에 점차 불만을 느끼게 되었다.

3) 피고 ○○○은 2009년경 ○○교사로 근무하게 되면서 직장 내 회식이 잦아졌는데, 원고는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기며 피고 ○○○의 귀가시간을 제한하는 등 피고 ○○○의 행동을 제약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 사이의 말다툼이 잦아졌고, 피고 ○○○은 원고에게 몇 차례 이혼 의사를 비추었다.

4) 피고 ○○○은 2011년 7월경부터 같은 학교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에게 호감을 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등 피고 ○○○과 교제하였고, 하루에 4, 5회 정도 연락을 주고 받으며 원고와의 갈등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5) 피고 ○○○은 2011. 7. 20.경 일기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을 "이쁜이"라고 칭하며 피고 ○○○과의 데이트가 황홀하였다거나 과학실에서 피고 ○○○을 만나 께안음으로써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고, 위 일기와 피고 ○○○의 사진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6) 원고는 2011. 7. 23. 피고 ○○○의 컴퓨터 내 일기를 확인하며 피고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2011. 8. 14. 22:00경 원고의 오빠와 함께 피고 ○○○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고들이 피고 ○○○의 승용차 뒷자리에 동승한 것을 발견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차에서 내리라며 언성을 높였고 상호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피고 ○○○은 승용차에 타려는 원고를 밀쳤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전치 3주의 양측 전완부 타박상, 양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입었다.

7) 피고 ○○○은 2011. 8. 30.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 화분 등을 손괴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전치 3주의 다발성 좌상,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었다.

8)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한 후 2011년 10월경 사건본인과 함께 집을 나와 현재까지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9) 원고는 2011. 10. 14. 피고들을 "피고들은 간통하고, 피고 ○○○은 2011. 8. 14.과 같은 달 30.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고 2011. 8. 30.경 원고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1형제○○○○호). 위 지청 검사는 2012. 2. 28. 피고들에 대한 간통 혐의에 대하여는 서로의 손을 잡거나 가볍게 애무한 사실은 있으나 성교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피고 ○○○에 대한 손괴 혐의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고, 피고 ○○○에 대한 상해 부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의 약식기소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정○○○), 위 법원은 피고 ○○○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수사기관은 피고 ○○○의 손괴 부분

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내지 17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혼 및 피고 ○○○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1, 6호로 인용

[판단근거]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위 인정사실, 특히 원고와 피고 ○○○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별거하며 각자 생활하고 있고, 쌍방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②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에게 있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은 혼인기간 동안 상반된 성격으로 인해 잦은 마찰을 빚었음에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여 갈등을 고착시켜 나간바,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에게도 혼인파탄의 일부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 ○○○은 원고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보다는 갈등 상황을 회피한 채 피고 ○○○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 ○○○과의 관계가 알려진 후에도 원고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 없이 이혼만을 고집하고 원고를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에게 있다 할 것이다.

2) 위자료 청구 : 피고 ○○○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1. 10.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단근거] 원고와 피고 ○○○의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 ○○○의 나이 및 경제력 등 여러 사정 참작

다. 피고 ○○○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은 피고 ○○○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 원고와 피고 ○○○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의 혼인기간, 피고들이 부정한 관계에 있었던 기간 및 정도, 피고 ○○○의 나이 및 다른 혼인관계 파탄사유의 존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려 볼 때, 피고 ○○○이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은 피고 ○○○과 연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1. 10.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원고와 피고 ○○○(이하 2., 3.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은 결혼 당시 피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7,000만 원으로 전셋집을 구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결혼 전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직장생활을 계속하였다. 원고는 신혼 초부터 재산관리를 전담하며 피고에게 매월 용돈을 지급하였는데, 2011년 8월경부터는 자신들의 소득을 각자 관리하고 있다.

3)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하였다. 피고의 모 ○○○은 2007년 말부터 2008년까지 상당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07. 8. 10. 부산 ○○○구 ○동 ○○○외 ○필지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28,000,000원에 매수하여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5)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으로부터 238,500,000원을 받았고, 위 돈과 예금 등을 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과 아파트 수리비 등을 지급하였다.

6) 원고는 종전 거주지 전세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받아 ○○에게 지급하였고, 2007. 8. 3. 피고 명의 예금 24,987,644원, 2007. 8. 7. 원고 명의 예금 5,000만 원을 각 해지하고 위 금액 상당을 ○○에게 지급하였다(원고는 시모에게서 받은 돈 중 대부분을 변제하고 3,900만 원이 남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3호증의 5,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일시에 근접하여 원고가 해약한 위 예금 부분에 한하

여 원고가 ○○에게 반환한 것으로 본다).

7) 피고는 2011. 8. 1. 부산 ○○○구 ○동 ○○○○-○ ○○○오피스텔 ○○○호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93,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당시 피고는 피고 명의 ○○증권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1,000만 원과 대출금 4,000만 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받은 임차보증금 5,300만 원 등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8) 원고는 2002. 6. 11. ○○○ 소유 김해시 ○○면 ○○리 ○○○ 전 ○○○○m²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2010. 4. 22. ○○○를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10가단○○○○○호), 원고는 ○○○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0. 6. 22. 위 소를 취하하였다.

9) 원고는 2010. 6. 18. 원고 명의 ○○은행 예금 계좌(이하 '이 사건 ○○은행 계좌'라 한다)로 8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위 계좌로 2010. 8. 2. 1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1억 원을 위 ○○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은행 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였다. 원고는 2010. 11. 22. 이 사건 ○○은행 계좌 잔액 140,000,000원을 출금하였다.

나. 재산분할대상 및 가액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2호증, 23호증의 2 내지 4, 을 제 3 내지 11호증(갑 제23호증을 제외하고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의 각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1) 이 사건 ○○은행 계좌 내 예금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혼인 전부터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 ○○○의 부탁으로 ○○○ 소유 국내 부동산을 관리하며 월세를 대신 지급받았다. ○○○는 2002년경 ○○○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를 제공받으며 원고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하였고, 원고는 ○○○의 요청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 대여금과 월세보증금 등을 합하여 모두 이 사건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은행 계좌 내 예금은 ○○○의 소유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0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4,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친척 ○○○는 1978. 7. 27. 부산 ○구 ○○동 ○○○-○ 대 ○○○㎡를 취득한 후 이를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고 있는 사실, ○○○는 1980년경부터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원고는 2011년 11월경부터 원고 명의 ○○은행 계좌로 위 부동산의 월세 등을 지급받고 위 부동산에 부과된 공과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은행 계좌를 통하여 ○○○ 소유 부동산 수입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은행 계좌를 통한 부동산 수입금 입출금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 점, 원고는 2010. 11. 22. 이 사건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40,0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은행 계좌에 입금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은행 계좌 내 예금이 ○○○의 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6호증의 기재 내용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은행 계좌 내 예금 1억 4,000만 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다만, 이 사건 ○○은행 계좌 예금 중 8,000만 원은 당초 원고가 혼인 전 ○○○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경료한 점에 터잡아 발생한 돈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특유재산에 가까운 돈으로 보이는 점, 피고 역시 가사조사시 원고가 ○○○의 돈 상당액을 관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0. 8. 3. 이 사건 ○○은행 계좌에서 "이모이자" 명목으로 1,750,000원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위 ○○은행 계좌로 "5천작년이자" 명목으로 1,750,000원을 입금한 점, 원고는 ○○은행 계좌를 통해 ○○○의 돈 미화 34,154.75달러를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 역시 이를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향후 상당 금액을 ○○○에게 반환해야 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2) 원고 명의 ○○○ 승용차

피고는 원고의 ○○○ 승용차를 재산분할 대상이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차량등록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 승용차의 99% 지분을, 원고의 부 ○○○가 1%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부 ○○○가 2010. 11. 11. 위 ○○○ 승용차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승용차는 ○○○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거나 증여한 재산으로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재

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피고의 ○○에 대한 채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며 모 ○○으로부터 2억 6,300만 원을 지급받고 7,00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모 ○○에게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모 ○○과의 관계, 원고와 피고가 ○○에게 지급한 금액과 그 지급 시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의 모 ○○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부족한 자금을 주면서 나중에 원, 피고가 형편이 되면 그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반환할 것을 기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는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일 뿐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고의 모 ○○이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 중 원고와 피고가 반환하지 않는 금액 역시 상당한바, 이는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45%, 피고 55%

[판단근거]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 및 파탄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건강, 직업, 소득, 이혼 이후의 생활능력 등 여러 사정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 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이용 상황 및 현재의 소유 명의와 취득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에 대하여 각 그 재산을 현재의 소유명의자에게 각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일방에게 귀속되는 가액이 그의 기여도에 따라 정당하게 배분되어야 할 재산가액을 초과하

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과부족분에 상응하는 만큼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여 정산함이 상당함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90,000,000원

[계산식] ① 원·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539,874,975원 \times 45% = 242,943,739원(소수점 이하 올림)

② 위 ①항의 돈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242,943,739원 - 147,334,975원 = 95,608,764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95,0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직권)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 원고로 지정

[판단근거] 원고가 별거 이후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계속 양육하여 왔고, 피고 역시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점에 동의하고 있는 점, 사건본인의 나이, 사건본인의 과거 및 현재 양육상황 등 여러 사정 참작

나. 양육비 부분

1) 과거 양육비 : 48,000,000원

원고의 양육기간과 양육내용, 원고와 피고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1. 10.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0. 18.까지의 과거양육비로 48,000,000원(= 월 400,000원 × 12개월)을 분담함이 상당함

[판단근거] 사건본인의 나이와 성별, 원고와 피고의 경제력, 원고가 청구하는 액수, 원고와 피고의 협의 내용 등 여러 사정 참작

2) 장래 양육비 : 사건본인의 나이, 원고와 피고의 경제적 능력,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2019. 2. 28.까지는 월 400,000원의, 2019. 3. 1.부터 2021. 2. 28.까지는 월 600,000원의, 2021. 3.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75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함이 상당함

다. 면접교섭(직권판단)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비양육자인 피고는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생활환경, 현재 상황,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7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정 청구,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홍선 _____

 판사 조지희 _____

 판사 오주영 _____

별지

분할재산 명세표

소유자등	순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원)	증거	
원고	적극재산	1	이 사건 ○○은행 계좌 내 예금 (2011.10.27.자 기준)	7,334,975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에 대한 주식회사 ○○은행 회신결과
		2	이 사건 ○○은행 계좌 인출금 (2010.11.22.자 기준)	140,000,000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에 대한 주식회사 ○○은행 회신결과
		소계		147,334,975	
	소극재산	1	없음		
		소계			
	원고의 순재산 (적극재산-소극재산)			147,334,975	
피고 ○○○○○○	적극재산	1	이 사건 아파트	340,000,000	갑9호증의1, 다툼 없는 사실
		2	○○은행 장기주택마련저축 (2011.10.20.기준)	42,540,000	을9
		3	○○증권 계좌 잔고 (2011.8.1.기준)	10,000,000	조사보고서
		소계		392,540,000	
	소극재산	없음			
		소계			
피고의 순재산 (적극재산-소극재산)			392,540,000		
원 · 피고 순재산 합계			539,874,975		